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은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04 발의연월일: 2025. 3. 19.

찬 성 자: 조은희 · 이만희 · 권영진

윤재옥 • 서천호 • 이종욱

박준태 • 최은석 • 강선영

박충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당원협의회는 2004년 법률 개정으로 폐지된 지구당의 역할을 대체하여 국회의원지역구, 자치구·시·군 및 읍·면·동 등의 지역 내 정당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었으며, 과거 지구당이 야기했던 정당 운영의 사당화 및 고비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원협의회 사무소는 둘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.

그러나, 현재 당원협의회가 사실상 상시적인 정당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활동 공간인 사무소의 설치까지 금지하는 것은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규정이며, 이는 지역주민의 정당 활동 을 촉진할 수 있는 통로를 제한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 면이 있음.

이에, 당원협의회(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의 당원협의회로 한정)는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

도록 하고, 중앙당은 당원협의회 현황(사무소 현황 포함)을 매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, 시·도당은 사무소를 둔 당원협의회에 운 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5조제3항 신 설, 제37조제3항 등).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한다.

③ 중앙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 현황(당원협의회가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그 사무소 현황을 포함한다)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.

제3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·시·군, 읍·면·동별로 당원 협의회를 둘 수 있고, 당원협의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사무소를 둘 수 있는 당원협의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의 당원협의회에 한정한다.
- ④ 시·도당은 당원협의회 사무소의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

있다.

제5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제37조(활동의 자유)제3항을 위반하여 당원협의회에 사무소를 둔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 제5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5조(정기보고) ① · ② (생	제35조(정기보고) ① · ② (현행
략)	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중앙당은 매년 12월 31일
	현재로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
	원협의회 현황(당원협의회가
	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그 사무
	소 현황을 포함한다)을 다음
	연도 1월 31일까지 중앙선거관
	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<u>④</u>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<u>제3</u>	<u>⑤</u> <u>제4</u>
<u>항</u> 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	<u> </u>
연간 활동실적을 당해 인터넷	
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	
하여야 한다.	<u>.</u>
제37조(활동의 자유) ① • ②	제37조(활동의 자유) ① • 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	③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
<u> 자치구・시・군, 읍・면・동별</u>	<u> 자치구・시・군, 읍・면・동별</u>
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.	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고,
<u>다만, 누구든지 시·도당 하부</u>	당원협의회는 그 사무를 처리
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	하기 위하여 사무소 1개소를
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	둘 수 있다. 이 경우 사무소를

다.

<신 설>
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다.

- 1. 2. (생략)
- 3. 제37조(활동의 자유)제3항 📗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ㆍ 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 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
- ② (생략)

둘 수 있는 당원협의회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실시하 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 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 인 정당의 당원협의회에 한정 한다.

④ 시·도당은 당원협의회 사 무소의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 원할 수 있다.

제59조(허위등록신청죄 등) ① 다 제59조(허위등록신청죄 등) ① -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제37조(활동의 자유)제3항을 위반하여 당원협의회에 사무 소를 둔 자
- ② (현행과 같음)